

제4절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적	뇌병 변	자폐 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계	22,244	12,413	2,241	2,291	1,182	2,228	166	597	588	66	472
1급	1,880	398	319	61	328	580	90	29	39	2	34
2급	2,923	678	62	434	395	583	48	218	438	8	59
3급	3,900	1,731	128	415	459	588	28	350	-	52	149
4급	3,394	2,341	127	577	-	231	-	-	4	-	114
5급	4,661	3,592	178	501	-	163	-	-	107	4	116
6급	5,486	3,673	1,427	303	-	83	-	-	-	-	-

가. 2010년 추진실적

○ 장애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급자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지적·자폐성중복장애)에게는 매월 13만원(2010. 1월~6월까지) 경증장애인(3급~6급)에게는 매월 3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겐 매월 12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겐 매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월평균 2,957명의 대상자에게 연간 1,872,825천원을 지원하였다.

○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수급중증장애아(1급, 2급 및 3급 지적·자폐성 중복장애)에게는 매월 20만원 경증장애아동(3급~6급)에게는 매월 1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장애아동수당 지급하여 월평균 197명의 대상자에게 연간 378,485천원을 지원하였다.

○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지적·자폐성 중복장애)중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매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추가 지급하여 월평균 1,180명의 대

자에게 연간 426,165천원을 지원하였다.

○ 장애인연금 지급

2010. 7월부터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 50 만원, 부부 : 80만원)이하인자에 대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20,000원~150,000원으로 월평균 1,662명의 대상자에게 1,471,514천원을 지원하였다.

○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하여 연간 276명의 대상자에게 총 68,011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였다.

○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고등 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하여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12.3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4천원(연1회),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6,6천원을 분기별 총 11명의대상자(고등 학생8명, 중학생3명)에게 9,403천원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였다.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신규 등록 장애인 42명에게 장애인 등록진단비(지적 및 자폐성장애 : 40천원, 기타장애 : 15천원) 총 965천원 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유형에 따라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워커, 진동시계 등의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95개에 대해 11,120천원을 교부하였다.

나. 2011년 사업계획

○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장애인연금 지급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 53만원, 부부 : 84.8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20,000원~151,200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고등 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15.7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4.9천원(연1회),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8천원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신규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진단비(지적 및 자폐성장애 : 40천원, 기타장애 : 15천원) 및 재진단 검사비 총 3,520천원을 지원하여 등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80여 명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보행보조차, 진동시계, 자세보조용구, 식사보조기구 등)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

3. 장애인 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

가. 2010년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동장애인중

함북지관에 990,8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6개 사업 67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462,4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도심 인근에 거주홈 개념의 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인권확보와 각종 질병으로 부터의 보호, 생활여건 개선 등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 8월에 입소정원 30명 규모로 개설하여 577,182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191,972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주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의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여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켰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200,842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 및 일거리를 제공하고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에 138,413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일반기업에 취업이 곤란하고 판매활동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이 취업 중인 직업재활시설 및 재가 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전시·판매함으로써 생산시설의 판로개척은 물론 자립기반을 조성하였다.

○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에 88,642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 및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159,11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568,543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였다.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227,428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도모하였다.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94,76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지원, 생활·문화지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 및 연계망 구축, 결연·후원 추진을 도모하였다.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94,76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도우미파견 및 지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다.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저하에 따라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 109명에게 232,497천원의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제공하고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7개 사업에 120,080천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에 20,500천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개척과 판매경쟁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나. 2011년 사업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5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4,416,604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재활 및 적응훈련을 돕고 가족구성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

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에 131,000천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들을 위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74,768천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 중증장애인 무료치과진료사업 시행

치과 진료가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인천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여 무료로 간단한 구강질환 치료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4.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및 활동지원

가. 2010년 추진실적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고자 장애인행정도우미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만 18세 이상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는 21명을 배치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원)에는 16명을 배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근로가능 장애인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할 것이다.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

구 분	기 간	인 원	사 업 내 용	비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010.2월 ~ 2011.1월	330명	- 언어,미술,음악,인지치료 - 장애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구분(주관)	기 간	인 원	사 업 내 용	비고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10.2월~ 2011.1월	280명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이동보조, 동료상담등 활동보조지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인천시)	2010.1월~ 12월	43명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활동보조지원사업 부족분 추가 지원	

○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저소득 재가 장애인과 가족 196여명에게 4회 5,500천원의 사업비로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일반인의 자원봉사 참여로 장애인과의 상호일체감과 유대관계 형성을 도모하였다.

○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1~3급 장애인가구 1,681세대에 월 2회 장애인재활정보신문을 보급함으로써, 각종 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나. 2011년 사업계획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관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및 장애인복지일자리(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소득보장으로 생활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행정 업무보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통해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

구 분	기 간	대 상	지 원	비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2011.2월~ 2012.1월	-만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언어,청각,자폐성, 시각 장애아동(400명) -전국가구평균소득100% 이하가구	- 수급자 : 22만원 - 차상위 : 20만원 - 전국가구평균 50% 이하 : 18만원 - 전국가구평균 100%이하 : 16만원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구 분	기 간	대 상	지원시간	비고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11. 2~9월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1급장애인(320명)	월 40~180시간 범위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2011. 10~12월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1급장애인(380명)	월 40~180시간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연중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1급장애인중 시 선정통보자(69명)	월 10~80시간 범위내	

○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저소득 계가 장애인과 가족에게 연4회(분기별) 나들이 기회제공으로 정서적 안정 및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일반인의 자원봉사 참여로 장애인과 상호일체감 및 유대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중증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3급 장애인 가구 1,800세대에 재활정보 신문을 월 1회 보급함으로써 각종 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